

② 개정 조문

〈지방세법〉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42조(과세대상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 <p>가. ~ 다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42조(과세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폐기물매립시설(둘 이상의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, 공동으로 소유권,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,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폐기물”이라 한다)</p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p>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	<p>제143조(납세의무자) ----- ----- 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